##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BEON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073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3.16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12.07]

njh@simplemen.co.kr

# [금호동 비원]

## 정 보 공 개 서

비원에프앤비(주)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비원에프앤비(주)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2층 06호(신림동) ]

[대표 전화번호 : 02-521-2992 ] [대표 팩스번호 : - ]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2-521-2992 ]

# 목 차

т	가매보브이	일반 현황
Ι.	1057-	2L LS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0010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1.01.11.01.01	여어 게 되에 과하 사비하 저비야 사이기가
VI.	가행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Ⅲ.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
ΙΥ	가매보브이	지역전 혀화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 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 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금호동 비원	서울시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2층 06호(신림동)				
비원에프앤비㈜	법 인 설 립 등 기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1.17	2022.01.25	남종현	02-521-2992		-	
	법인등록번호	110111-8168167	사업자등록번호			388-86-02483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ᆝᆝᅎᅿᄼ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2층 06호(신림동)			
사내이사	남종현/ 비원에프앤비㈜	금호동 비원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 L 1\(\(\tau\)	남종현	02-521-2992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박병진/ 비원에프앤비㈜	그 금오동 비원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2층 06호(신림동)			
감사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남종현	02-521-2992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박병진/ (주)심플맨		서울시 관익	구 신원로 40-9, 2	층 06호(신림동)	
특수관계인		백채 외2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T)02 !!	박병진, 양형석	1670-8025	031-493-292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심플맨	쌈불	2022.06.15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지하1층 01호(신림동)	박병진, 양형석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금호동 비원"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금호동 비원	
상 호	금호동 비원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BEONE	출원준비 중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8,001	2,130	5,871	0	-4,133	-4,128
2023년	5,386	1,393	3,992	0	-2,884	-1,878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анті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악			
8 급표시	한포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	-	-
금호동 비원	2022년	0	-	-
	2023년	0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이르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여부	이금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남종현	사내이사	2022.01.17. ~ 현재	비원에프앤비㈜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22.01.17. ~ 현재	비원에프앤비㈜ 감사	회사업무 감사	
		박병진 감사	2021.12.30. ~ 현재	㈜잘정 감사	회사업무 감사	
	박병진 2		2021.12.14. ~ 현재	㈜다수니 감사	회사업무 감사	
			2021.10.21. ~ 현재	㈜최가상회 감사	회사업무 감사	
관련 			2019.03~현재	㈜심플맨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2016.03~2019.03	㈜심플맨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2014.10~2016.03	㈜심플맨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2017.09.22.~ 현재	㈜거북이의기적 대표이사	운영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2	-	0

▶ 해당없음 : 직전연도 임직원 수가 없습니다.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심플맨	가맹사업 경영	2014. 12. ~ 현재	백채(등록번호:20151296)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심플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 2023.04	불반집(등록번호:20201306)라는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심플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 2024.04	1927김계월짜글이(등록번호:20210740 )이라는 한식사업 경영
	㈜심플맨	가맹사업 경영	2022.06.17 ~현재	서울떡갈비(등록번호:20220141)라는 한식사업 경영
	㈜거북이의기적	가맹사업 경영	2019.04. ~ 2022.04	거북이의기적(등록번호:20190486)이라 는 스터디카페 가맹사업경영

- ▶ 특수관계인의 거북이의기적은 2022년 4월, 1927김계월짜글이는 2024년 4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던 불반집은 2023.04월에 ㈜홍그리에 양도하였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신청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EONE	상표 서비스표	-	-	-	-

▶ 현재 당사는 위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금호동 비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06.03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없음 )

## 2. [금호동 비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심플맨	쌈불	박병진, 양형석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서대문구 명물길 21, 3층 01호(창천동)
㈜심플맨	쌈불	박병진, 양형석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지하1층 01호(신림동)
비원에프앤 비㈜	금호동 비원	남종현	2021.06.03. ~ 현재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40-9, 2층 06호(신림동)

## 3. [금호동 비원]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정입표시	대분류	소분류 (주요 상품)
금호동 비원	한식	정육식당(소고기, 돼지고기)

## 4. <u>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금호동 비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u>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1	-	1	1	-	-	-	-
서울	1	1	-	1	1	-	_	_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ı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최근 3년간 [금호동 비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0	1	-	-	-	1
2022년	1	-	-	-	-	1
2023년	1	-	-	1	-	0

#### 6. [금호동 비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사하/이르	GO 1	정보공개서	어조	가당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심플맨	백채	0151296	한식	149/1	171/1	181/0	
	㈜심플맨	불반집	20201306	한식	0/2	-	-	
특수관계 인	㈜심플맨	1927김계월짜글 이	20210740	한식	-	-	-	
	㈜심플맨	서울떡갈비	20220141	한식	-	1/15	1/16	
	㈜거북이의 기적	거북이의기적	20190486	스터디카페	-		-	

- ▶ 특수관계인의 거북이의기적은 2022년 4월, 1927김계월짜글이는 2024년 4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던 불반집은 2023.04월에 ㈜홍그리에 양도하였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14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TICH	2023년 말	연 평균 <sup> </sup>	간 매츠애		간		간	ш¬	
지역	가맹점			정판 메립	들액(상한)	정판 배함	출액(하한)	비고	
	수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²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m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1	-	1	1	-	-	-	
충북	-	1	-	1	1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8. [금호동 비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u>금호동 비원</u>]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下世	구긴	712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	-	-		
광고비	소계	2022.01 2022.12	-				
판촉비		2023.01~2023.12	-	_	1		

<sup>▶</sup> 당사는 광고 및 판촉비에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금을 가맹점 오픈 후 받고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금호동 비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11,000	가맹점 오픈 후 1일 이내 은행 입금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계속 가맹금 (가맹비의 50%) -점포 실사 -가맹점 오픈 시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 -오픈 시 인력지원
교육비	없음			-	-개점 전 조리/서비스/운영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5,000	가맹점 오픈 후 1일 이내 은행 입금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TE	신규 가입자
합계	16,000
가맹비	11,000
개점 전 교육비	없음
보증금	5,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평수: 15평)(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15평)	면적(3.3m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46,900	3,127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공개)	27,500	1,833	협의		설계 및 디자인, 목공사, 전기, 조명, 도장, 설비, 바닥타일 및 마감 등
간판	미지정	2,000	1,485	협의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메인간판, 사이드 간판(기본4m기준) 필요 시 공사 진행
기기 및 설비	(비공개)	13,500	-	협의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등
의/탁자 및 가구	(비공개)	1,900	-	협의		테이블, 의자 등

초도물품 (원.부재료)	(비공개)	2,000		협의		별지1	참조
POS	(비공개)	월 사용료			설치 전 계약취소		
	외부공사, 파사드, 컴퓨터, 테라스 등		, 냉난방기, 소병	방설비, 외장	,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 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간판·장비·설비 등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집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사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하며 귀하는 <u>금 삼백삼십만원(₩3,300,000)(VAT포함)</u>의 감리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때 감리는 이미지 및 컨셉 관련 부분을 의미하며, 당사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별도로 계약하고 위 감리비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 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금호동 비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3.3%	익월 5일	미반환	영업표지 사용대가	매월 말일정산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광고 14일 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V-91)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판촉 14일 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제 용역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결제 연체 시

POS (비공개)	미확정		미반환	사용료로 소요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에는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한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상태 및 위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위생, 레시피, 영업방침,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사항 점검이나 기타 재고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하고 식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회계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당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갱신 혹은 재계약 이후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 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금호동 비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6-2)]을 참고하십시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금호동 비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 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 해당없음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금호동 비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

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금호동 비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금호동 비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 <b>상품명</b> > 참조	□ 이외의 세포윽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521-2992)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다른 가맹점	본 정보공개서 V-3-1)에서 지정된 가맹점 판매 메뉴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숙성 한우 등심(200g)	37,200	공기밥	1,500		
숙성 한우 채끝(100g)	18,600	한우 된장찌개	13,500		
숙성 한우 제비추리(100g)	14,600	한돈 김치찌개	13,500		
숙성 한우 살치(100g)	25,000	진로이즈백	3,000		
숙성 한우 안심(200g)	39,600	처음처럼	3,000	변동 시	
숙성 미국산 진갈비(100g)	14,200	참이슬	3,000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 기타	2022년 07월 기준
숙성 미국산 살치(100g)	11,000	테라	3,000	통신수단으로	0/월 기판
숙성 미국산 안창(100g)	13,600	카스	3,000	공지	
숙성 한돈 삼겹살(100g)	6,200				
숙성 한돈 목살(100g)	6,200				
숙성 한돈 항정(100g)	7,600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 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한 합중 급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정육식당	금호동 비원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매장기준 반경 1km로 하되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 ▶ 배달영업지역도 위 영업지역과 동일합니다.
-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지역이 특수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공간만 귀하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벗어나는 곳은 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양판점,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 병원, 전철역,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공항, 호텔,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 당사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 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가맹사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금호동 비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해당없음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해당없음 : 당사의 금호동 비원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금호동 비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	-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제32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항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 우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		
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33조	1항 1호
경우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 우	33조	1항 2호
·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3조	1항 2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2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수시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 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POS등의 설치(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2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3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	

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3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 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정한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02-521-299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 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 → 요건 검토 → 승 인통지(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교육수료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동일한 영업지역에 한함) [금호동 비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정육식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금호동 비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월 26일 이상 영업 (매장상황에 따라 휴무일 조정)	문의: 본사 (02-521-2992)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 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 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배우자, 친·인척 등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금호동 비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 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ㅂ다 저1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17
광고 및 판촉	상품광고 및 판촉	광고 및 판촉비의 50%	광고 및 판촉비의 50%	광고 및 판촉 계획→ 가맹점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통보 →비용입 금→광고 시행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적립포인트제도 기타 판촉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광고 등의 내용 및 광고물에 대 하여 귀하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계약종료 후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4,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 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TE	네ㅎ	포표기진	프로드랙
합계		50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D-50~48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32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D-31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31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0~28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27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3 (25일)	-
교육실시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3 (7일)	-
설비 및 집기	-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10~2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표준모델 49.5m²(15평)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O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 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취고까다이 된 거이에도 된다신다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금호동 비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금호동 비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주	<b></b>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1회당 2,200(1인 기준)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숙박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별첨2]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비원에프앤비㈜				영업표지	금호동 비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확인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	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비원에프앤비㈜ 대표이사 <u>남</u>	송	<u>연</u> (	(민)
------------------------------	---	------------	-----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비원에프앤비㈜			영업표지	금호동 비원
페고하이	· ·			서를 제공받은 경옥 <b>공받았습니다</b> ."라고	위 " <b>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b> 작성합니다.
제공확인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비원에프앤비㈜	대표이사	<u> 남 종 현</u>	(인)
----------------	------	---------------	-----

가맹희망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